

< 민원 답변서 >

(신청번호 : 1AA-2603-0178410)

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1AA-2603-0178410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2. 귀하의 민원내용은 ‘국립대학법인인 귀 기관이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달요청 의무기관에 해당되는지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3. 귀하의 질의사항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‘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’ 하는 의무기관의 범위는 ‘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’으로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귀 기관은 조달요청 의무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4.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(박순주 사무관 ☎042-724-7529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1AA-2603-0178410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2. 귀하의 민원내용은 ‘서울대학교가 「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인지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3. 귀하의 질의 사항 3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서울대학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의 “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”로서, 정부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의 중앙관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「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1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- 다만, 「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」에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의 “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”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향후 동 고시 개정 시에 이를 반영(신설)할 예정입니다.
 - 아울러 현재 서울대학교는 제3조제3항의 “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·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”으로 변경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조달등록팀 이남수 사무관(☎070-4056-7061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조달청 조달등록팀장